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42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421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단1118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박세진

피고, 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변론 종결2024. 3. 13.

판결 선고2024. 4. 17.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단1118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20. 6. 22.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6. 2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0,647,7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4,245원과 이에 대한 202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금덕희

판사이상균

판사고종영

별지